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서 지출〉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5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서 지출	3
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3.
3. 회부연월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세출 기준이 부재함으로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정비하고, 인건비계정 내 세입·세출 근거 조문 등을 현행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 2호).

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서 지출

개정안은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2. ----- -----.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u>실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가. ----- ----- <u>실제 비용</u> ----- -----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u>소방공무원</u> 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나. ----- ----- ----- <u>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 (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u> ----- -----

현행	개정안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도지사는 <u>소속 소방공무원의</u>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 <u>소방공무원등의</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략)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략)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u>소방공무원</u> 의 인건비로 한다.	② ----- <u>소방공무원등</u> -----.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u>소방공무원</u>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u>소방공무원등의</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소방사무를 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업무¹⁾, ②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1) 「지방자치법」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²⁾, ③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구조·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³⁾, ④ 그 밖에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2)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5. 삭제 <2015. 7. 24.>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1호).

이와 같은 소방사무는 주로 특정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도 소방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소방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65,578명으로, 이 중 소방공무원은 65,261명, 그 밖에 경찰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은 317명으로 나타남⁴⁾⁵⁾.

4) 참고로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소방공무원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일컫는 용어임.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5)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원 (5~9급, 연구직 등)		경찰공무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계	322	317	246	241	76	76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178	168	174	164	4	4
시·도 소방본부	144	149	72	77	72	72

(자료: 소방청)

<소방사무 종사 공무원 현황>

(기준일: 2025. 11. 30, 단위: 명, %)

구분	소방사무 수행 공무원 총계 (A=B+C)		소방공무원 (B)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C)		소방사무 수행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C/A)		인건비 재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계	67,123	65,578	66,801	65,261	322	317	0.48	0.48	
소방청*	931	873	753	705	178	168	19.1	19.2	일반회계
시·도	66,192	64,705	66,048	64,556	144	149	0.22	0.23	- 소방공무원:소 방특별회계 인 건비계정 - 기타 공무원: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 비계정

* 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자료: 소방청)

현행법은 시·도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총당과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제3조)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제4조)⁶).

이에 따라 현재 ① 지방정부(시·도)의 소방사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모두 각 시·도의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반면,

6)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총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정부(소방청)의 소방사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음.

한편,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1) 봉급, 각종 수당, 상여금, 직무수행경비 등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보수성 인건비와 2) 연금 부담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부담 인건비로 구분할 수 있음⁷⁾⁸⁾.

그런데, 현행법 제2조제2호는 인건비를 정의하면서, 1) 보수성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 규정하여 소방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해, 2) 사용자부담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로 정의하여(제2조 제2호⁹⁾),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서 소방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7) 참고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현금급여(Cash wages & salaries)와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Employer's social contributions)으로 GFS(정부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

* GFS는 국가의 재정 활동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일관되게 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통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관리하고 있음.

8) 사용자부담 인건비에는 사용자부담 인건비에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이 있음.

9)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부담 인건비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2항), 시행령에서는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구체화하면서 이를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영 제2조10)),

동일한 소방사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사용자부담 인건비를 인건비계정에서 지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건비는 소방특별회계의 소방정책사업비계정에서 지출 되고 있음.

-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구조·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 10)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이와 같이 현행 제도는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인건비의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건비’의 범위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경찰 협력관¹¹⁾,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세출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현행과 개정안: 계정별 세출 내역>

계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개정안의 취지)
인건비 계정	- <u>소방공무원 인건비</u>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u>공무원</u> 의 <u>인건비</u>	-인건비 경비는 인건비계정에 편성 및 집행
소방정책 사업비 계정	- <u>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건비</u> -소방정책사업비	-소방정책사업비	-사업비계정에서는 소방 관련 사업비만 편성·집행하도록 하여 기능별 계정 정합성 제고

11) 현재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는 긴급신고 모니터링 및 소방청·경찰청 공동대응 현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76명 파견되어 있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④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정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 1의2 : 경감 이하 72명)

소방특별회계에 인건비계정을 별도로 설치한 취지와 소방사무의 실질적 수행 구조를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보수, 직무수행경비 및 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을 인건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인건비계정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소방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사용자부담 인건비를 인건비계정에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예상되는 재원이전 규모는 약 140억원(전국)이라고 설명함¹²⁾.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 및 규모>

(단위 : 억원)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계정		사업비계정		인건비계정		사업비계정	
계	6조 4,902	계	140	계	6조 5,042 (+140)	계	-
·소방공무원 (시도 정원 : 66,048)	6조 4,902	· 일반직 공무원 (시도 정원 72)	86	· 소방공무원	6조 4,902	-	-
		· 경찰공무원 (시도 정원 72)	54	· 일반직 공무원	86		
				· 경찰공무원	54		

(자료: 소방청)

12)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다만, 개정안 제2조제2호나목은 사용자부담 인건비의 사용 범위를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방소방기관’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에 관한 기본법인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 규정하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방기관’으로 보면서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3조제1항)¹³⁾.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¹⁴⁾」은 지방소방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⁵⁾.

즉, ‘지방소방기관’이라는 용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사용

13)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1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소방기관으로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消防艇隊),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 소방체험관을 규정하고 있음.

되고 있는 개념인데, 법률에서 하위법령상의 개념인 ‘지방소방기관’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법률의 해석 범위가 종속되는 등 법령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 간 용어의 일관성과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조제2호나목의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을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소속 공무원 및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그 밖에, 개정안은 “실비”를 “실제 비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실비(實費)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로 드는 비용’이고¹⁶⁾, 법제처의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르면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비’라는 용어를 ‘실제 비용’으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⁷⁾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인건비를 기존 사업비 계정에서 인건비계정으로 이전하여 각 계정별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6)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자료검색일 2026. 1. 5.)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8B%A4%EB%B9%84>)

17)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별책 정비권고용어 2497번, 2023.12.

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 ----- ----- -----

지역자원시설세¹⁸⁾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18)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¹⁹⁾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은 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②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임.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42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에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 조문이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였으나, 2021년 1월 1일에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로 변경되었음.

19) 현행 「지방세법」 제142조는 2019.12.31.에 전문개정되었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개정 연혁(일부 발취)>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6855호 (‘2019.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시행일 2014.1.1.>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u>소방시설</u>,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u>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u> [전문개정 2019.12.31.]

이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근거조문은 제142조 제2항제3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법률 제17893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 조문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로 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 조문을 현행 「지방세법」에 맞게 정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자료: 소방청)

1. 도입 배경

- '20년 4월 1일 소방 국가직 전환의 일환으로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회계법')」을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도 소방본부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을 전국적으로 통일 및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감소하는 데 기여 목적

2. 주요 내용

- (계정구분)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로 구분하여 예산성격에 따른 항목구분 명확화
 -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
 - 청사 건축이나 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
- (시·도 여건 반영)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별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을 차등화
 -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기타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
- (재정 안정성 강화) 시·도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하여 독립성·책임성을 강화 및 소방특별회계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 대응

3. 예산편성 현황 분석

- (인건비 상승) 소방특별회계 시행 이래인 최근 6년간(21년 ~ 26년) 예산편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의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인건비 계정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 '21년 당시 전체의 69.5% 수준이었던 인건비 비중은 2026년 기준 76.3%까지 도달하여 **소방 재정의 극심한 경직성을 초래**
 - 예산의 3/4 이상이 인건비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인건비를 별도의계정으로 엄격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시도별 재정격차 발생 우려**
- (소방정책사업비 위축) 인건비 비중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업비의 상대적 축소**를 야기, '21년 30.5%에 달했던 사업비 비중이 매년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26년에는 23.7%까지 감소
 - 소방관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장비 현대화, 노후 청사 개선 및 첨단 소방 시설 확충 등을 위한 **가용 자원이 실질적으로 잠식 중**
- (결 론) 본 법률 개정안은 단순히 일반직·경찰직 인건비 재정의이전을 넘어, 인건비와 사업비 간 재정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되므로 **발의 원안 대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방특별회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계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	
2026년	8조 5,967	6조 5,550	(76.3%)	2조 417	(23.7%)
2025년	8조 4,790	6조 3,632	(75%)	2조 1,158	(25%)
2024년	8조 952	6조 20	(74.1%)	2조 932	(25.9%)
2023년	7조 7,302	5조 5,232	(71.4%)	2조 2,070	(28.6%)
2022년	7조 1,913	5조 1,260	(71.3%)	2조 653	(28.7%)
2021년	6조 6,893	4조 6,464	(69.5%)	2조 429	(30.5%)

※ 2026년 : 본예산 기준 / 그 외 : 최종예산 기준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구조

